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378호 2013. 7.16 (화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013호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 2
- 하동군 조례 제2014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8
- 하동군 조례 제2015호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3-32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44차)····· 16
- 하동군 고시 제2013-33호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고시····· 18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3-482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22
- 하동군 공고 제2013-487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23

회 람									
----------------	--	--	--	--	--	--	--	--	--

하 동 군 공 보

(2) 제 378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3년 7월 16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13호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유공자”를 “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으로 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몰군경유족”이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본문 중 “제2조의 각 호”를 “제2조”로 하고, 단서 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3조제2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본문 및 제1호와 제3호의 “참전 유공자”를 각각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참전(유족)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연4회로, 지급 시기는 분기말로 한다.”를 “매월 1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4) 제 378 호

[별지 제1호서식] (제5조관련)

참 전 (유 족) 명 예 수 당 지 급 신 청 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보 훈 번 호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예금 계좌	예 금 주	은 행 명	계 좌 번 호	
<p>「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하동군수 귀하</p>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제5조관련)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참 전 유공자	성 명		보훈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사 망 일 자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div style="margin-left: 150px;">년 월 일</div> <div style="margin-left: 350px;">신청인</div> <div style="margin-left: 600px;">(서명 또는 인)</div>						
하동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하 동 군 공 보

(6) 제 378 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u>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에 따라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u>유공자</u>에 대하여 지원을 하여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① (생략) ② < <u>신 설</u> ></p> <p>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u>제2조의 각 호</u>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하동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u>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3조 제2항의 <u>규정에 따라</u>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자는 제외한다.</p>	<p>제명 <u>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 <u>유공자 와 전몰군경유족</u> ----- ----- -----</p> <p>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u>전몰군경유족</u>”이라 함은 「<u>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4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법 제6조에 따라 <u>유족으로 등록된 사람</u>을 말한다.</p> <p>제3조(지원대상) ----- 제2조에 ----- ----- ----- --<u>제3조 제2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7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p>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u>참전유공자</u>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참전유공자</u>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 지급 2. (생략) 3. 그 밖에 <u>참전유공자</u>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4조(지원사업) ----- <u>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u>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 지급 2. (현행과 같음) 3. ----- <u>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u>-----
<p>제5조(지급신청)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u>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u>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5조(지급신청) ① -----</p> <p>-----<u>참전(유족)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u>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 (생략)</p>	<p>제6조 (현행과 같음)</p>
<p>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은 연 4회로, 지급 시기는 분기 말로 한다. 다만, 지급시점에 사망한 때는 월 정산하여 직계가족 등 유가족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p> <p>----- 매월 1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 ~ 제9조 (생략)</p>	<p>제8조 ~ 제9조 (현행과 같음)</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3년 7월 16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14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특수업무수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본문 중 “병원선 승선근무공무원”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19조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 3] 의 지급구분표

제3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3호 관련)

지급대상	지급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0,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하 동 군 공 보

(10) 제 378 호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특수업무수당 중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및 병원선 승선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과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 시체화장,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분뇨처리,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현지에서 직접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특수업무수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병원선 승선근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 -----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병원선 승선근무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p>제3조(방범수당) ① 영 별표 9 제20호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의 지급액은 월 40,000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방범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경력 연수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더해서 지급할 수 있다.</p>	<p>제3조 <삭제></p>

하 동 군 공 보

(11) 제 378 호

현 행	개 정 안																																																				
<p>[별표 3] <u>병원선 승선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u> (제2조제3호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164 622 791 1104"> <thead> <tr> <th>직</th> <th>급</th> <th>별</th> <th>지</th> <th>급</th> <th>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일반직 공무원</td> <td></td> <td>의 사</td> <td>월</td> <td>1,012,000원</td> <td>이하</td> </tr> <tr> <td></td> <td>간 호 사</td> <td>월</td> <td>65,000원</td> <td>이하</td> </tr> <tr> <td></td> <td>5 급 이 상</td> <td>월</td> <td>82,000원</td> <td>이하</td> </tr> <tr> <td></td> <td>6 급 및 7 급</td> <td>월</td> <td>65,000원</td> <td>이하</td> </tr> <tr> <td></td> <td>8 급 이 하</td> <td>월</td> <td>40,000원</td> <td>이하</td> </tr> <tr> <td rowspan="3">기능직 공무원</td> <td></td> <td>7 등 급 이 상</td> <td>월</td> <td>50,000원</td> <td>이하</td> </tr> <tr> <td></td> <td>8 등 급 및 9 등 급</td> <td>월</td> <td>30,000원</td> <td>이하</td> </tr> <tr> <td></td> <td>10 등 급</td> <td>월</td> <td>21,000원</td> <td>이하</td> </tr> </tbody> </table>	직	급	별	지	급	액	일반직 공무원		의 사	월	1,012,000원	이하		간 호 사	월	65,000원	이하		5 급 이 상	월	82,000원	이하		6 급 및 7 급	월	65,000원	이하		8 급 이 하	월	40,000원	이하	기능직 공무원		7 등 급 이 상	월	50,000원	이하		8 등 급 및 9 등 급	월	30,000원	이하		10 등 급	월	21,000원	이하	<p>[별표 3] <u>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u> (제2조제3호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833 640 1469 1104"> <thead> <tr> <th>지급대상</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td> <td>월 250,000원</td> </tr> </tbody> </table>	지급대상	지급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0,000원
직	급	별	지	급	액																																																
일반직 공무원		의 사	월	1,012,000원	이하																																																
		간 호 사	월	65,000원	이하																																																
		5 급 이 상	월	82,000원	이하																																																
		6 급 및 7 급	월	65,000원	이하																																																
		8 급 이 하	월	40,000원	이하																																																
기능직 공무원		7 등 급 이 상	월	50,000원	이하																																																
		8 등 급 및 9 등 급	월	30,000원	이하																																																
		10 등 급	월	21,000원	이하																																																
지급대상	지급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0,000원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3년 7월 16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15호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중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1073-219번지 일원으로”를 “군 관내로”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1073-219번지 일원에”를 “군에서 캠핑장으로 지정 관리하는”으로 한다.

제6조(사용료)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캠핑장 시설사용료(제6조 관련)

시 설 별	사용기준	비 수 기		성 수 기 (7~8월)	비 고
		평 일 (일~목요일)	주말.공휴전일 (금,토,공휴전일)		
모빌홈	6인실	70,000	100,000	130,000	1일기준
카라반	4인실	50,000	80,000	100,000	
오토캠핑장 (전기·샤워시설포함)	1개소/1대당	20,000	20,000	20,000	

※ 비수기 평일에 단체(20인 이상) 및 장기체류자(2주이상)는 시설사용료의 30% 할인
단, 단체할인을 적용은 숙박시설 사용기준정원에 따름.

※ 숙박시설 사용료는 기준정원 초과시 1인당(중학생이상) 5,000원 추가징수

※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까지 5,000원, 1시간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초과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이후 1일치 추가)

※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제7조제1호 중 “50%”를 “30%”로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14) 제 378 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u>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1073-219번지 일원</u> 으로 한다.	제2조(위치) ----- ----- <u>군 관내</u> 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캠핑장" 이라 함은 <u>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1073-219번지 일원에 설치된</u> 숙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집단을 말한다. 2 ~ 7. (생 략)	제3조(정의) ----- ----- 1. ----- <u>군에서 캠핑장</u> 으로 지정 관리하는 ----- ----- 2 ~ 7.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시설사용료 <u>50%</u> 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가. 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나. 군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하는 경우 다.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제7조(사용료의 감면) ----- ----- 1. ----- <u>30%</u> ----- ----- 가. ----- ----- 나. ----- ----- 다. -----																																																										
<u><신 설></u>	<u>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u>																																																										
[별표 1] 캠핑장 시설사용료(제6조 제1항)	[별표 1] 캠핑장 시설사용료(제6조 관련)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시 설 별</th> <th rowspan="2">사용기준</th> <th colspan="2">비 수 기</th> <th rowspan="2">성 수 기 (7~8월)</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평 일</th> <th>주말·공휴 전일</th> </tr> </thead> <tbody> <tr> <td>모빌홈</td> <td>6인실/1일</td> <td>70,000</td> <td>100,000</td> <td>130,000</td> <td></td> </tr> <tr> <td>카라반</td> <td>4인실/1일</td> <td>50,000</td> <td>80,000</td> <td>100,000</td> <td></td> </tr> <tr> <td>오토캠핑장</td> <td>1개소/1대당</td> <td>10,000</td> <td>10,000</td> <td>10,000</td> <td></td> </tr> <tr> <td>샤워장</td> <td>1회/1일</td> <td>2,000</td> <td>2,000</td> <td>2,000</td> <td>어린이는 1,000원</td> </tr> </tbody> </table>	시 설 별	사용기준	비 수 기		성 수 기 (7~8월)	비 고	평 일	주말·공휴 전일	모빌홈	6인실/1일	70,000	100,000	130,000		카라반	4인실/1일	50,000	80,000	100,000		오토캠핑장	1개소/1대당	10,000	10,000	10,000		샤워장	1회/1일	2,000	2,000	2,000	어린이는 1,000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시 설 별</th> <th rowspan="2">사용기준</th> <th colspan="2">비 수 기</th> <th rowspan="2">성 수 기 (7~8월)</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평 일 (일~목요일)</th> <th>주말·공휴전일 (금·토·공휴전일)</th> </tr> </thead> <tbody> <tr> <td>모빌홈</td> <td>6인실</td> <td>70,000</td> <td>100,000</td> <td>130,000</td> <td></td> </tr> <tr> <td>카라반</td> <td>4인실</td> <td>50,000</td> <td>80,000</td> <td>100,000</td> <td></td> </tr> <tr> <td>오토캠핑장 (전기·샤워 시설 포함)</td> <td>1개소/1대당</td> <td>20,000</td> <td>20,000</td> <td>20,000</td> <td>1일기준</td> </tr> </tbody> </table>	시 설 별	사용기준	비 수 기		성 수 기 (7~8월)	비 고	평 일 (일~목요일)	주말·공휴전일 (금·토·공휴전일)	모빌홈	6인실	70,000	100,000	130,000		카라반	4인실	50,000	80,000	100,000		오토캠핑장 (전기·샤워 시설 포함)	1개소/1대당	20,000	20,000	20,000	1일기준
시 설 별			사용기준	비 수 기			성 수 기 (7~8월)	비 고																																																			
	평 일	주말·공휴 전일																																																									
모빌홈	6인실/1일	70,000	100,000	130,000																																																							
카라반	4인실/1일	50,000	80,000	100,000																																																							
오토캠핑장	1개소/1대당	10,000	10,000	10,000																																																							
샤워장	1회/1일	2,000	2,000	2,000	어린이는 1,000원																																																						
시 설 별	사용기준	비 수 기		성 수 기 (7~8월)	비 고																																																						
		평 일 (일~목요일)	주말·공휴전일 (금·토·공휴전일)																																																								
모빌홈	6인실	70,000	100,000	130,000																																																							
카라반	4인실	50,000	80,000	100,000																																																							
오토캠핑장 (전기·샤워 시설 포함)	1개소/1대당	20,000	20,000	20,000	1일기준																																																						
※ 비수기 평일에 단체(20인 이상) 및 장기체류자(2주이상)는 시설사용료의 30% 할인 단, 단체할인을 적용은 숙박시설 사용기준 정원에 따름	※ 비수기 평일에 단체(20인 이상) 및 장기체류자(2주이상)는 시설사용료의 30% 할인 단, 단체할인을 적용은 숙박시설 사용기준 정원에 따름																																																										

하 동 군 공 보

(15) 제 378 호

현 행	개 정 안
<p>※ 숙박시설 사용료는 기준정원 초과시 1인당 (중학생이상) 5,000원 추가징수</p> <p>※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까지 5,000원, 1시간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초과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이후 1일치 추가)</p>	<p>※ 숙박시설 사용료는 기준정원 초과시 1인당 (중학생이상) 5,000원 추가징수</p> <p>※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까지 5,000원, 1시간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초과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이후 1일치 추가)</p> <p>※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p>

하동군 고시 제2013 - 32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44차)

도로명주소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7. 12.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566-15 외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7.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17) 제 378 호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827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원우길 68	20070618	원우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동매리 685-3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669-37	20070618	도로시점이 악양중심으로부터 서쪽에 위치하는 방향성 부여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1238-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401	20070618	도지정 기념물 제21호인 지리산 쌍계사 가는길로 탐방객의 인지도를 고려하고 역사성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109-15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공항길 281	20070618	신기마을과 공항마을을 지나가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합성하여 도로명에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603-3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길 46-4	20080402	두방산과 두방재 아래에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979-3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중하쌍길 53-76	20080402	중하쌍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1421-3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425	20090302	횡천-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도로가 청학동으로 가는 도로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130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1809-37	20090302	횡천-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도로가 청학동으로 가는 도로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301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018-30	20090302	횡천-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도로가 청학동으로 가는 도로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513-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566-15	20090710	19번 국도의 일부로서, 섬진강을 따라 형성된 도로로 지역명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246-18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송림2길 6	20091229	광평리에 있는 소나무 군락지의 지명에 일련번호방식의 두번째 도로명 반영	신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고시

제215회 하동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확정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의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6일

하 동 군 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현황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55,513,950	324,268,618	31,245,332	9.64%
일반회계	334,710,386	304,036,950	30,673,436	10.09%
특별회계	20,803,564	20,231,668	571,896	2.83%
기타특별회계	20,803,564	20,231,668	571,896	2.8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298,220	5,253,320	44,900	0.85%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749,527	778,010	△28,483	△3.66%
저소득주민생활특별회계	412,934	378,256	34,678	9.17%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590,000	590,000	0	0.0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852,980	852,980	0	0.00%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4,749,400	4,603,400	146,000	3.17%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3,100,300	3,100,300	0	0.00%
농업재해복구자금특별회계	1,153,029	1,153,029	0	0.00%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	3,897,174	3,522,373	374,801	10.64%

2. 세입예산

2013년도 추경 1 회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전체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합계	355,513,950	324,268,618	31,245,332	9.64%
지방세수입	13,930,000	13,930,000	0	0.00%
세외수입	48,338,472	41,527,510	6,810,962	16.40%
경상적세외수입	7,689,974	7,634,583	55,391	0.73%
임시적세외수입	40,648,498	33,892,927	6,755,571	19.93%
지방교부세	161,747,961	144,676,933	17,071,028	11.8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8,000,000	8,000,000	0	0.00%
보조금	123,497,517	116,134,175	7,363,342	6.34%
국고보조금등	96,848,176	90,144,969	6,703,207	7.44%
시,도비보조금등	26,649,341	25,989,206	660,135	2.54%

3. 세출예산

2013년도 추경 1 회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전체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55,513,950	324,268,618	31,245,332	9.64 %
일반공공행정	19,473,495	19,094,496	378,999	1.98 %
공공질서및안전	3,313,208	3,114,018	199,190	6.40 %
교육	4,204,390	4,104,390	100,000	2.44 %
문화및관광	28,842,240	26,171,505	2,670,735	10.20 %
환경보호	24,014,955	24,091,606	△76,651	△0.32 %
사회복지	57,366,963	54,693,652	2,673,311	4.89 %
보건	7,660,821	7,791,848	△131,027	△1.68 %
농림해양수산	74,366,744	68,600,974	5,765,770	8.40 %
산업·중소기업	37,161,118	32,190,778	4,970,340	15.44 %
수송및교통	23,901,874	15,337,963	8,563,911	55.83 %
국토및지역개발	25,296,440	19,838,093	5,458,347	27.51 %
예비비	4,144,818	3,506,518	638,300	18.20 %
기타	45,766,884	45,732,777	34,107	0.07 %

하동군공고 제2013-482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유해야생동물 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획허가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13. 7. 10

하 동 군 수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사항

- 포획 목적 : 유해야생동물 구제
- 포획 기간 : 2013. 07. 11 ~ 2013. 07. 21
- 허가 내역

허가지역	허가자 (포획자)	포획방법	포획기간	포획동물 및 수량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내	박금조	총렵 (자력)	2013. 07. 11 ~ 2013. 07. 21	허가기간 내 멧돼지 10마리 이내

○ 포획제외지역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4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및 동법 제55조(수렵의 제한),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시 안전수칙)에 해당하는 지역 및 장소
- 군수가 정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장소

공고 제2013-487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유해야생동물 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획허가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13. 7. 15

하 동 군 수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사항

- 포획 목적 : 유해야생동물 구제
- 포획 기간 : 2013. 07. 17 ~ 2013. 09. 16
- 허가 내역

허가지역	허가자 (포획자)	포획방법	포획기간	포획동물 및 수량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내	김동수	총렵 (자력)	2013. 07. 17 ~ 2013. 09. 16	허가기간 내 까치, 비둘기 100마리 이내

○ 포획제외지역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4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및 동법 제55조(수렵의 제한),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시 안전수칙)에 해당하는 지역 및 장소
- 군수가 정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장소